투자설명서

베트남 아세안 플러스 주식투자신탁 1호

이 투자설명서는 베트남 아세안 플러스 주식투자신탁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아세안 플러스 주식투자신탁1호 수익증권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 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 탁 명 : 베트남 아세안 플러스 주식투자신탁1호

2. 투자신탁의 종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종류형, 추가형

3. 자산운용회사명 : NH-CA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02-368-3600)

해외위탁운용사 : CAAM Singapore

4. 판 매 회 사 명 : 농협중앙회등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 1588-210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는 않습니다.

5. 작성기준일: 2008년 12월 20일

6.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설명서 요약]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 2. 신탁계약기간
- 3. 분류
- 4. 자산운용회사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6. 수탁고 추이
- 7. 해지사유

Ⅱ.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 2. 주요투자전략
- 3. 주요투자위험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6. 운용전문인력
- 7.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나. 연평균 수익률

Ⅲ 수수료 보수, 과세

-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분배

- 1. 매입
- 2. 환매
-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1. 투자전략
- 2. 투자위험
- 3. 투자대상
- 4. 투자제한

Ⅱ. 자산의 평가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시의 선정기준

IV.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시항

-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2. 환매관련 유의시항
- 3. 분배관련 유의시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시항

I. 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 3. 최근 2개 사업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 4. 운용자산 규모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Ⅱ. 판매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Ⅲ. 수탁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IV. 일반시무관리회사에 관한 시항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시항

[. 수익자의 권리

-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4. 손해배상책임
- 5. 재판관할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Ⅱ. 공시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2.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4쪽)

1. 명 칭: 베트남 아세안 플러스 주식투자신탁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Class A: 63261, Class C1: 63262, Class Ci: 76014)

2. 신탁계약기간: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 류: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해외투자형

4. 자산운용회사: NH-CA 자산운용주식회사

5. 해외위탁운용사: 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re

Ⅱ 투자정보 (☞본문 4~5쪽)

п 174.9	エ(- こと + 0円)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고도의 성장가능성을 지닌 베트남 및 ASEAN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주식과 한국주식에 동시 투자하여 장기 고소득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신탁의 비교자수: MSCI AC South East Asia Index (70%) + KOSPI(20%) + Call rate (10%)				
2. 주요	-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및 ASEAN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투자전략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한국주식시장에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통한 장기 투지를 함으로써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NH–CA자산운용은 국내 주식 및 유동성 운용을 담당하며, 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re는 베트남 및 아세안 주식운용을 담당합니다.				
	- CAAM Singapore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US 달러와 해당지역통화로 투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US달러 환율은 환혜지를 할 계획이며, 해당지역통화에 대한 혜지는 CAAM				
	싱가폴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만 할 예정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위험에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및 ASEAN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및				
적합한 투자자	한국주식에 동시에 투자함으로써 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투자위험 5등급 중				
유형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 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신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ca.com)에서 확인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0 0	, , , , ,	펀드수	운용자산규모	1 T T 0 0 4 4 4 4
Reginald Tan	Director and Head of Research	10	USD 1607.5million	운용경력 17년 • 2003~: CAAM Singapore Director • 2000~2003: CAAM Singapore Senior Fundmanager • 1995 ~ CMG First State Investment Ltd.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CAAM Singapore의 펀드매니저 Reginald Tan이 운용.

7. 투자실적 추이 : 이 실적은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최근1년			최근2년		설정일이후			
구분	07.12.21 ~08.12.20		06.12.21 ~08.12.20		06.12.20 ~08.12.20	06.12.20 ~08.12.20	07.11.13 ~08.12.20		
	Class A	Class C1	Class Ci	Class A	Class C1	Class Ci	Class A	Class C1	Class Ci
투자신탁	-55.92	-56.40	-55.65	-22.09	-22.74		-22.09	-22.74	-55.91
비교지수*	-38.68	-38.68	-38.68	-10.52	-10.52		-10.52	-10.52	-40.70

* 비교지수: MSCI AC South East Asia Index (70%) + KOSPI(20%) + Call rate (10%)

매입 ■ 환매 관련 정보 (☞본문 6~7쪽)

1. 수수료 및 보수

Ш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종류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i														
2	구익증	권 판매기준	없음	없음	음 납입금액 납입금액 자산운용업법 : 10억이상 50억이상 와구법점에 의 또는 이 투자 10억억이상 10억억이상 명구 100억원 이상 미		재B형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밥에 의한 기금,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밥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수익자에 게 직접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2%	없음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 수수 료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1 년 미만 : 이익금의 30%																	
Ealalel		자산운용회사	연 0.8480%	연 0.8480%	연 0.8480%	연 0.8480%	연 0.8480%														
투자신탁 에 부과	보	판매회사	연 0.575%	연 1.575%	연 0.575%	연 0.075%	연 0.05%														
되는 보 수 및 비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탁회사	연 0.06%				
용(순자		일반사무관리사	연 0.017%	연 0.017%	연 0.017%	연 0.017%	연 0.017%														
│ 산총액기 │ 준)		기타비용	연 0.01%수준	연 0.01%수준	연 0.01%수준	연 0.01%수준	연 0.01%수준														
	총보	L수/비용비율	연1.51%수준	연2.51%수준	연1.51%수준	연1.01%수준	연0.985%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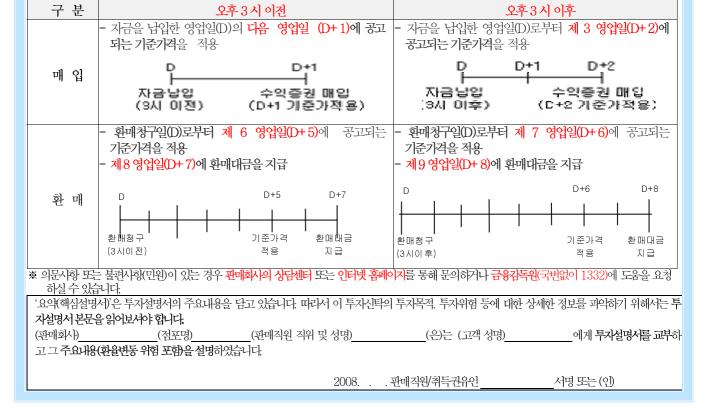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과세

투자지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12.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징주식(해외주식포함),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내상 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매입.화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 시~오후 4 시 30 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²⁾ 총보수 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 비용수준을 나타냄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베트남 아세안 플러스 주식투자신탁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Class A: 63261, Class C1: 63262, Class Ci: 76014)

2. 신탁계약기간 및 회계기간

- (1)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2) 신탁회계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1 년간
- (단,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
- 3. 종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NH-CA 자산운용주식회사 (☎02-368-3600)

4. 자산운용회사 -해외위탁운용사 크레디아그리콜 에셋 매니지먼트 싱가폴(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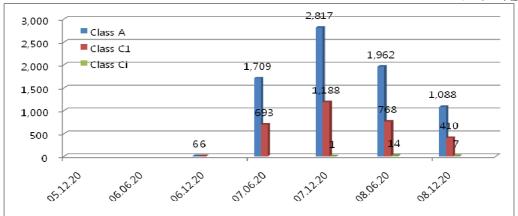
업무위탁범위: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베트남 및 아세안국가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 위탁. ※단. 운용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NH-CA 자산운용에 있습니다.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2006년 12월 20일 최초설정.

6. 수탁고 추이

(단위 : 억원)



7. 해지시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고도의 성장가능성을 지난 베트남 및 ASEAN(태국,싱기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주식과 한국주식에 동시 투자하여 장기 고소득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및 ASEAN(태국,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주식과 한국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 투자신탁의 비교지수 : MSCI AC South East Asia Index (70%) + KOSPI(20%) + Call rate (10%)

2. 주요 투자전략

1) 운용전략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과 ASEAN 국가(한국주식포함)에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통한 장기 투지를 함으로써 고위험 대비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 농협 CA 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주식 및 유동성 운용을 담당하며, 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re 은 베트남 및 ASEAN 주식운용을 담당합니다.
- 베트남 및 5개의 아세안 국가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한 국가에 집중 투자하여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시장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국제분산투자 효과를 추구합니다. 또한 베트남 등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의 투자는 시장의 발전상황에 따른 전략적 배분 및 아세안 국가로의 분산투자를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2) 국기별 배분전략 - 국기별 주식투자비율

투자초기에는 베트남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자산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 베트남 - 20%, 아세안 5개국 - 45%, 한국 - 25%, 유동성 - 10% (유동성부분은 화혜지 및 화매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목적임) 핫후 베트남 주식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베트남 주식의 투자는 최대 40%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3) 통화관련 헤징 전략(환위험 관리전략)

- CAAM Singapore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US 달러와 해당지역통화로 투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US달러 환율은 환혜지를 할 계획이며, 해당지역통화에 대한 헤지는 CAAM 싱가폴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만 할 예정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펀드의 주요 투자 위험 및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원본 손실위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원리금은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 니다. 손실은 전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우용사 및 판매사등은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2) 국가위험

주요투자 대상국인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 습니다.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 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현재 베트남 증권시장의 제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 의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베트남 유가증권 시장은 총 상장종 목수가 60여개 수준이며, 시가총액은 7조원 정도입니다. 외국인 취득제한은 종목당 49%까지이며, 시장 시스템 이 취약하여 거래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4) 시장위험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금리 등의 시장가격변동과 수급,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투자자산의 손실위 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5) 화율위험

베트남 및 ASEAN 투자의 경우 달러화 또는 해당국가 통화로 투자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위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대비 환혜지를 시행할 계획이며 지 역통화에 대한 헤지는 부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환혜지는 거의 불가능하며 환율 변동 위험 은 어느정도 존재하게 됩니다.

6) 파생상품투자위험

투자국가의 투자대상으로 파생상품을 10% 이하를 투자할 수 있으며 장외파생 상품의 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펀드에서는 초기 베트남 투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베트남 주식 관련 장외 파생상품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7) 순자산가치변동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환매기간이 국내투자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까지의 기간동안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8) 오퍼레이션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 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 니다

9) 기타위험

기타 예기치 못한 정치, 경제, 사회, 자연적 문제로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탁약관에 따라 흰매 연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상 세 기재되어있습니다.

한 투자자 유형

4. 투자위험에 적합 이 투자신탁은 한국과 베트남 및 ASEAN(태국,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주식에 동시에 투자함으로 써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투자위험 5등급 중 1등급에 해 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 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투자자 유형별 펀드위험등급

등급	위 험 등 급		투자자 유형
1	매 우 높 은 위 험	고 수 익 추 구 형	성 장 형 투 자전 략을 추구하고 매우 높은 시장 변 동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함.
2	높은 위험	수 익 추 구 형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만,자금의 일부분을 채권 에 투자하여 어느정도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함.
3	중 간 위 험	위 험 중 립 형	투 자 자 금 의 대 부 분 을 채 권 등 의 안 정 적 인 자 산 에 투 자 하 고 일 정 부 분 주 식 에 투 자 하 여 주 가 상 승 에 따 라 이 익 을 추 구 하 는 상 품 으 로 서 위 험 중 립 형 성 향 의 투 자 자 에 게 적 합 함
4	낮 은 위 험	위 험 회 피 형	투 자 자 금 의 대 부 분 을 채 권 등 의 안 정 적 인 자 산 에 투 자 하 는 하 는 상 품 으 로 서 안 정 적 인 성 향 의 장 기 투 자 자 에 게 적 합 함
5	매 우 낮 은 위 험	안 정 지 향 형	단기 여유자금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함.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시사에게 막답함.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시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영업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 게시 또는 지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이므로 설정시기,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학력	주요경력
필립페르슈롱	1962	파리제 2 대학 재무전공 석사	자산운용 19 년
김영준	196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자산운용 16 년, 조시분석5 년
양해만	1969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졸	자산운용 9년, 조시분석 2년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시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외위탁운용사 (크레디아그리콜 에셋매니지먼트, 싱기포르) 2008.11 기준

성명	학력	주요경력
Reginald Tan	BSc in Economics, from the Wharton School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 • 2003~: CAAM Singapore Director

⁻ 이 펀드의 운용은 크레디아그리콜 에셋매니지먼트 싱기포르의 펀드매니저 Reginald Tan이 운용합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수익률

										[단위:%]
	최근1년			최근2년			설정일이후			
	구분	07.	07.12.21 ~08.12.20		06.12.21 ~08.12.20		06.12.20 ~08.12.20	06.12.20 ~08.12.20	07.11.13 ~ 08.12.20	
		Class A	Class C1	Class Ci	Class A	Class C1	Class Ci	Class A	Class C1	Class Ci
E	투자신탁	-55.92	-56.40	-55.65	-22.09	-22.74		-22.09	-22.74	-55.91
Ĺ	비교지수*	-38.68	-38.68	-38.68	-10.52	-10.52		-10.52	-10.52	-4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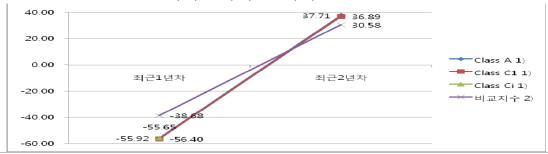
비교지수: MSCI AC South East Asia Index (70%) + KOSPI(20%) + Call rate (10%) Class Ci Class A Class Class Ci -10.00 -20.00 32008.12.20 투자신척 -08.12 06.12.21~08.12036.12.20060182120027018111 -30.00 ■ 비교지수 근1 최근2년 설정일이후 -40.00 -50.00 -60.00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인귀 70]
		최근1년차		최근2년차		
구분		07.12.21 ~08.12.20		06.12.21 ~07.12.20		
	Class A	Class C1	Class Ci	Class A	Class C1	Class Ci
투자신탁1)	-55.92	-56.40	-55.65	37.71	36.89	
비교지수 2)	-38.68	-38.68	-38.68	30.58	30.58	

주1)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음.

주2) 비교지수 MSCI AC South East Asia Index (70%) + KOSPI(20%) + Call rate (10%)



Ⅲ. 수수료 보수, 과세

1. 수수료 보수 및 비용

(1) Class A - 선취 판매수수료 부과하 고 납입금액 및 납 압방법에 제한이 없 는 경우

구	보	지급비율	지급시기
수익자가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2%	판매시
기 구시기 부담하는 비 용	환매수수료	- 90 일미만 : 이악금의 70% (목적식 투자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이후 환 매시 환매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환매시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8480%	매 3개월 후급
투자신탁이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5750%	및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수탁회시보수	순자신총액의 0.06%	해지시
मो 😣	일반시무관리 회사보수	순자신총액의 0.017%	
	기 타	순자신총액의 0.01%수준	시유발생시
	합 계	순자산총액의 1.51%수준	

(2) Class C-1 납입금액 및 납입방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판매시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 용	환매수수료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1 년미만: 이익금의 30% (목적식 투자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이후 환매시 한마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환매시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신총액의 0.8480%	매 3개월
투자신탁이	판매회사보수	순자신총액의 1.5750%	후급 및 투자신탁의
부담하는	수탁회시보수	순자신총액의 0.06%	일부 또는 건보체기자
비 용	일반시무관리 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17%	전부해지시
	기 타	순자신총액의 0.01%수준	사유발생시
	합 계	순자신총액의 2.51%수준	

(3) Class C-2 납입 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판매수수료	-	판매시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 용	환매수수료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1 년미만: 이익금의 30% (목적식 투자 고객은 계약기간 이후환매시 환매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환매시	
	지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8480%	매 3개월 후급	
투자신탁이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5750%	및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부담하는	수탁회시보수	순자신총액의 0.06%	글	
用 융	일반시무관리 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17%		
	기 타	순자산총액의 0.01%수준	사유발생시	
	합 계	순자산총액의 1.51%수준		

(4) Class C-3 납입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_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판매수수료	-	판매시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 용	환매수수료	-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 1 년미만 : 이익금의 30% (목적식 투자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이후환 매시 환매수수료가 먼제됩니다.)	환매시
		지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8480%	매 3개월 후급
	투자신탁이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750%	및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부담하는	수탁화시보수	순자신총액의 0.06%	전부해지시
	비 용	일반시무관리 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17%	
		기 타	순자산총액의 0.01%수준	사유발생시
		합 계	순자산총액의 1.01%수준	

Class Ci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조의2의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 자자,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급,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 령에 의한 간접투자 기구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판매수수료	-	판매시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 용	환매수수료	-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 1 년미만 : 이익금의 30% (목적식 투자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이후환 매시 환매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환매시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8480%	매 3개월
투자신탁이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5%	후급 및 투자신탁의
부담하는	수탁화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6%	일부 또는
비 용	일반시무관리 회사보수	순자신총액의 0.017%	전부해지시
	기 타	순자신총액의 0.01%수준	시유발생시
	합 계	순자신총액의 0.985%수준	

^{*} 기타비용은 선물옵션 매매거래 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비율등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는 실제운용기간이 1년미만으로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특정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 Class A	<u>351,680</u>	<u>678,170</u>	<u>1,038,125</u>	<u>2,107,808</u>
2) Class C-1	<u>257,275</u>	<u>811,059</u>	<u>1,421,607</u>	<u>3,235,977</u>
3) Class C-2	<u>154,775</u>	<u>487,928</u>	<u>855,230</u>	<u>1,946,735</u>
4) Class C-3	<u>103,525</u>	<u>326,363</u>	<u>572,041</u>	<u>1,302,126</u>
5) Class Ci	<u>99,938</u>	<u>315,053</u>	<u>552,218</u>	<u>1,257,003</u>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3.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장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12월 말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해외주식포함),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내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유의 사항

해외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07년 6월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여 국외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대상으로 하며, mutual fund, REITs, ETF 및 이와 유시한 성격의 paper company(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내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치익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펀드전체 소득이 아닌 국외상장주식에 대한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국외상장주식의 배당금 및 다른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V. 매입 ■ 환매 분배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매입시 기준가격 등

- 투자자는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1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매입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판매시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단,토요일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 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2.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시 영업일은 한국증권거래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익증권 환매시 (1) **오후 3시 이전** 화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6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기준가격 등 6영업일 1영업일 8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2) 오후 3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7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1영업일 7영업일 9영업일 환매대금지급일 기준가적용일 환매청구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익증권의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화매연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매제하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시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5영업일 전일(오후3시 경과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수수료 Class A :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Class C-1,C-2,C-3, Ci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 1 년미만 : 이익금의 30% (목적식 투자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화매시, 화매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매입 및 환매청구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중에 가능합니다. 의 취소(정정) 3. 이익등의 분배 [D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mark>당해 종류 수익증권별</mark> 이익금을 투자신탁 □ 이익분배 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이익분배금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mark>종류</mark> 의한 수익증권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당해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및 수익지별 매수 수익증권의 매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해야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야합니다. [1]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가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효등 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 1) 운용전략

전략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과 ASEAN 국가(한국주식포함)에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한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고위 험 대비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 NH-CA 자산운용은 국내 주식 및 유동성 운용을 담당하며, 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re 은 베트남 및 ASEAN 주식운용을 담당합니다.
- 베트남 및 5개의 아세안 국가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한 국가에 집중 투자하여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시장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국제분산투자 효과를 추구합니다. 또한 베트남 등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의 투자는 시장의 발전상황에 따른 전략적 배분 및 아세안 국가로의 분산투자를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2) 국기별 배분전략 - 국기별 주식투자비율

투자초기에는 베트남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자산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 20%, 아세안 5개국 - 45%, 한국 - 25%, 유동성 - 10%

(유동성부분은 환혜지 및 환매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목적임)

향후 베트남 주식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베트남 주식의 투자는 최대 40%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3) 통화관련 헤징 전략(환위험 관리전략)

- CAAM Singapore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US 달러와 해당지역통화로 투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US달러 환율은 환혜지를 할 계획이며, 해당지역통화에 대한 혜지는 CAAM 성가폴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만 할 예정입니다.

■ 베트남을 비롯한 성장성이 높은 ASEAN 국가중 말레이지아, 싱기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집중 투자



- 1.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베트남 및 금융, 원자재, 기술력을 가진 ASEAN 시장 등에 분산투자
- 2.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경제의 차세대 엔진
- 3. 브릭스를 이을 대표적 신흥시장으로 세계 경제의 변방에서 매력적인 관심시장으로 부상
- 4. 베트남: 중국에 이은 세계 최고 수준의 GDP 성장률과 국영기업의 IPO 및 외국인 투자비중 확대

- 5. 금융시장의 싱가포르, 천연지원 대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 6.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출구조의 다각화, 급증하는 인프라 투자에 따라 이머장시장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

<아세안 국가 지표>

	면적	총인구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CDP	1인당 GDP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Country								수출	수입	총합		
	km ²	천	명 / km²	percent	US\$ million	US\$	US\$ PPP 5/	US\$ million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6	2006	2006	2005	2006
Brunei Darussalam	5,765	396	69	3.5	12,317.0	31,076.1	25,191.4	7,619.4	1,488.9	9, 108.3	288.5	433.5
Cambodia ^{1/}	181,035	14,475	80	2.2	8,662.3	598.4	3,777.9	3,514.4	2,923.0	6,437.4	381.2	483.2
Indonesia	1,890,754	224,905	119	1.2	431,717.7	1,919.6	4,931.0	100,798.6	61,065.5	161,864.1	8,336.0	5,556.2
Lao PDR	236,800	5,608	24	2.8	4,128.1	736.1	2,839.5	402.7	587.5	990.2	27.7	187.4
Malaysia	330,252	27,174	82	2.0	186,960.7	6,880.2	14,256.4	157,226.9	128,316.1	285,543.0	3,964.8	6,059.7
Myanmar ^{2/}	676,577	58,605	87	2.3	12,632.7	215.6	2,193.2	3,514.8	2,115.5	5,630.3	235.9	143.0
The Philippines	300,000	88,875	296	2.0	146,894.8	1,652.8	5,918.2	47,410.1	51,773.7	99, 183.8	1,854.0	2,345.0
Singapore	704	4,589	6,518	2.3	161,546.6	35,206.1	37,359.9	271,607.9	238,482.0	510,089.9	15,001.9	24,055.4
Thailand	513,120	65,694	128	4.6	245,701.9	3,740.1	10,677.7	121,579.5	127, 108.8	248,688.3	8,957.0	10,756.1
Viet Nam	329,315	85,205	259	1.2	71,292.1	836.7	3,835.7	37,033.7	40,236.8	77,270.5	2,020.8	2,360.0
ASEAN	4,464,322	575,525	129	1.9	1,281,853.9	2,227.3	5,961.9	750,708.0	654,097.8	1,404,805.8	41,067.8	52,379.5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2. 투자 시장위험 해외 주식형 간접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 대상이 되는 간접투자신탁의 가격 히락 위험에 노출 됩니다. 실 위험 질적으로 본 간접투자신탁의 가격 하락의 위험은 투자 대상이 되는 해외 주식, 채권의 가격하락의 위험으 로부터 발생합니다. 투자 대상 증권은 해당 투자국과 국내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편입대상 종목이 국내와 해외를 포괄하므로 분산효과를 통해 투자 대상 증권 의 시장 위험은 일부분 상쇄 시킬 수 있지만 투자 자산의 가격 하락에 따른 간접 투자 기구의 신탁재산의 가치가 허락할 수 있는 위험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식 및 채권의 가격을 등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해외투자의 경우 환율 변동위험의 시장 위험의 하나의 예가 됩니다. 즉 투자 대상이 되는 국가의 통회의 환율과 국내 통화와의 환율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는 매일 변동하게 되며 하락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 위험 상회사의 사업 구조가 흰율의 변화에 민감할 경우 환율위험이 증권의 가격변동위험(시장위험)을 확대 시 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간접투자기구가 환율 관련 파생상품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하 고자 하더라도 완전한 위험회피는 현실적으로 불기능 하기 때문에 해당 투자국과의 환율변동이 신탁 재 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투자위본손 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원리금은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 이 있습니다. 손실은 전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운용사 및 판매사등은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 실위험 니 합니다. 주요투자 대상국인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많은 불확실성을 가 국가위험 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 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투 본 가접투자기구는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 하기 위해. 선도환 거래 및 환 선물 등 환율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휘율관련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투자 대상국 및 투자 대상 통화에 대한 화율 변동 위험을 자위험 모두 헤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흰율 관련 파생상품의 종류 및 조간(흰율 관련 파생상품의 최소 계약 금액, 계약 기간 등) 혹은 헤지대상 환율을 위한 환율 파생상품의 존재여부 등의 제약으로 완전 헤지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흰율 위험이 완전하게 헤지 되지 못해 흰율 변동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가 격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투자의 경우 환매 청구에 따른 환매기간이 일반 국내 투자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 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기가동안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유동성위험 화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 재산의 가격 하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의 경우 투자 대상국의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등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이 야기될 수 있습 니다.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달리 운영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개장과 폐장 시간의 차이로 운영(오퍼레 이션) 위험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기를 위한 환율의 적용에 있어서 제 반 규정에 따라 상이한 참조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 사무의 처리의 복잡성, 현금 운용의 복잡성 등 해외 투자의 경우 일반 운영위험은 일반 국내 투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재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

다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연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

3. 주요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국내주식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지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해외주식	60% 이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증권중 국내주식과 유시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베트남 및 ASEAN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베트남 및 ASEAN 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 유기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상장공모를 하기 위한 IPO 주식을 포함한다)에 한하다.]
③국내채권	40% 이하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제외)
④해외채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증권중 국내채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비등록· 비상장인 경우를 포함함)
5 어음	40% 이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⑥자산유동 화증권	40%) 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⑦주식, 채코 및 통화관련장 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은 15%이하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통화선물
8금리스욉 거래	. 채권또는채무증 서총액의 100%이하	
9수익증권 등	5%이하	신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30%까지 투자기능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가능
①투자 증 권 의 대여	.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		
<u>수</u> 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해외장내,장외파생상품		법 제 2 조제 8 호 및 제 9 호에 의거한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방지만을 목적으로 투자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기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시 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3 호에 따 른 계약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개설되거나 그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공인된 시장,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장(이하 :유기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거나 또는 유기증권시장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채권등과 관련된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성품
단기대	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⑥ 및 ⑧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신총액의 10%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⑥ 및 ⑧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제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Ī	구분	내 용	적용 예외
	동일종목	자신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	최초설정
	투자	로 인정됩니다.	일로부터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개월간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	
		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	
		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 무증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시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시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	
		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시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	
		조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기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	
		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EAL 10.0	다음 1월간 적용한다.	
	동일회사 발 행주식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투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최초설정
	자	자신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의로 본 8 일로부터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mark>파생상품 거래에</mark>	1월간
		따른 위험평가액은 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간접투자기구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	
		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리카리호	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기대출 하도초과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단기대출	는 미새시프
	الاستناس	투자, 동일종목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한	/
		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위의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	계열회시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주식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가액여	이 시기총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	이 투자신탁은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np= :1
		※후순위채권: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¹ 채무들 상
		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Ⅱ.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산정 및 공시

1. 자산평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주요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でで自り 1 1 0 0 C 1 3 0 7 0 日で 1 日 1 E 日 1 1 1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기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시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00112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			
면(878세년 	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	해당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 최종시가			
식 및 상장채권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히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채무증서			
비상장외화표시유가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지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선접구시 중건	유기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증권시장등(이하		
~35円円~353百 	"유기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 고객실 기원시계시 고리철 기사 기자메가시 케취디가나 메가시 고리철 기사 이 사기이 기거의 기구근			

* 공정한 가치산정이 곤란한 지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상기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2. 기준가격 신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시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산정주기

일반시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공시시기

지산운용회사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해 매일 매일 공시합니다.

□ 공시방법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 게시 또는 NH-CA자산유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장소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시의 선정기준

- 1. 선정절차 및 1) 거래증권사의 조사분석서비스와 거래체결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함.
- 기준 2) 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 거래 증권사 목록이 작성되며, 가장 높은 평가를 얻는 그룹에 상대적으로 높은 주문배분을 함.
 - 3) 새로운 중개회사의 지명시 준법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함.
 - -준법위험관리위원회는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등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승인을 함.
 - 4) 운용부서는 중개회사별 매매배분계획을 세워 이를 준수함.
 - 5) 매 분기말 준법감시인에게 실제 거래배분결과와 새로운 배분계획을 제출함.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지산운용회사에 관한 시항

1. 회사의 □ 자산운용회사명 : NH-CA자산운용주식회사

개요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02-368-3600)

□회사연혁:

연도	회시연혁
2002.4.5	농협과 CA-AM 간에 투신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 체결
2003.1.28	법인설립 (지본금 300 억, 농협 60%, CAAM 40%)
2003.3.28	금감위로부터 투신업 본허가 취득
2003.4.9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
2003.8.7	지문업 등록(금융감독원)
2003.10.29	투자일임업 등록
2004.5.14	Asian Investor 로부터 2004 한국의 최우수 운용사로 선정
2005.3.1	Asia Asset Management 로부터 2004 한국 최우수 신상품상 수상
2005.4.7	수탁고 7조 돌파
2006.9.26	국민연금 SRI 펀드 운용사로 선정

무

2. 주요업 ■ 자산운용회사 업무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가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 제1항의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 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투자신탁의 자산우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자산유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 및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가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시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해외위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CAAM 싱가포르(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re)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탁자산운용

- ①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 1. 운용업무 및 운용지시업무 회사
 - 2. 조시분석업무
 - 3. 단순 매매주문업무

② 해외위탁회사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크레딧 아그라콜 에셋 매니지먼트(CAAM)사 소개

- ① 크레딧 아그리콜은 신용도 AA 인 (from Fitch IBCA) 유럽의 중요 은행그룹 중 하나임,
- ② 2004 년 자신기준 세계에서 2 번째로 큰 은행임 (US\$55bn in the July 2004 issue of "The Economist")
- ③ 크레딧 아그리콜은 크레딧 리요네를 2003 년 6 월 인수합병하였음
- ④ 1997 년 크레딧 아그리콜 자산운용시는 엥도수에즈 자산운용시를 합병하였음
- (5) 크레딧 아그리콜 에셋 매니지먼트사는 Fitch-AMR 로부터 aa+ 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이는 크레딧 아그리콜의 지역별 자회사에도 적용이 됨
- ⑥ 2004년 03월 31일 기준, 크레딧 아그러콜 지산운용사는 미화 3.470억불(약36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 투자자는 기관, 각 국가의 중앙은행, 상업은행, 국제기관, 연기금, 기업 등 다양함

⑦ 유럽에서 운용 규모 기준 채권 부분 1 위 (Global Fund Analysis, LIPPER)

■ 크레딧 아그리콜 에셋 매니지먼트싱가폴(CAAM) Singapore 소개

A. 2006년 수탁고 : SGD4,707M (약 3조원)

B. 회사 연혁

설립일	1989년 2월 27일
회사 연혁	- 1997년 9월 18일자로 "엥도수에즈 싱가폴자산운용"에서 "엥도크레디아그리꼴 싱가폴 (Indocam Singapore Limited)"로 변경 2001년 5월 21일자로 "엥도크레디아그리꼴자산운용 싱가폴 (Indocam Singapore Limited)"에서 크레디 아그리꼴 에셋 매니지먼트 싱가폴(Cré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로 변경

C. 대주주 현황

주요주주	크레디아그리콜자산운용 파리(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A.(Paris)), 프랑스
보유주식 수 및 비율	1,000,000 (100%)

※ 해외위탁회시가 약관 제6-1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NH-CA자산운용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최근 2사 업연도의 요약재무내 용 (단위: 백만

워)

	대하대조표		손익계산서			
항목	'07.3말	'08.3말	항목	'07.3말	'08.3말	
유동자산	36,045	40,676	영업수익	11,332	11,332	
고정자산	2,011	3,686	영업비용	8,538	10,719	
자산총계	38,056	44,362	영업이익	2,794	6,191	
유동부채	1,236	2,848	영업외수익	12	499	
고정부채	57	123	영업외비용	1	8	
부채총계	1,293	2,971	경상이익	2,805	6,682	
지본금	30,000	30,000	특별이익	_	_	
이익잉여금	6,763	11,391	특별손실	_	34	
지본조정	_	_	법인세	851	2,020	
지본총계	38,056	41,391	당기순이익	1,954	4,628	
					 [단위:억원	

5 운용자산 규모 (2008년 12월 현재)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부동산	특별	재간접	실물	총계
수탁고	12,774	8,148	2,738	39,237	11,867	0	0	402	0	75, 167

6 운용전문인력에관한 시항

성 명	출생년도	학력	주요경력
필립페르슈롱	1962	파리제 2 대학 재무전공 석사	자산운용 19 년
김영준	196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지산운용 16 년, 조시분석5 년
양해만	1969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졸	자산운용 9년, 조사분석 2년

※ 해외위탁운용사 (크레디아그리콜 에셋매니지먼트, 싱가포르) 2008.11 기준

	펀드매니저	Reginald Tan	
		총 U\$ 1607.5 million	
÷	운용 자산규모	펀드명	운용규모
((USD, 좌)	Segregated Account (i.e. Mandate)	1,420.9 million
		Third-party mutual fund (i.e. NH-CA funds)	69.9 million

	Mutual fund (CAAM funds ASEAN New Markets)		116.7 million	
	회사 경력		경력 	
제기 오유경령	CAAM Singapore	2003 - present: Head of Research		
과거 운용경력	CAAM Singapore		nior Fund Manager	
	CMG First State Investment	1995 - 2000: Fund Manager		

⁻ 이 펀드의 운용은 크레디아그리콜 에셋매니지먼트, 싱가포르의 펀드매니저 Reginald Tan이 운용합니다.

Ⅱ. 판매회사에 관한 시항

판매회사 기개요

판매회시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주소
교보증권	02-3771-9000	http://www.iprovest.com
국민은행	02-2073-7114	http://www.kbstar.com/
굿모닝신한	02-3772-1000	http://www.good.com
광주은행	062-239-5000	http://www.kjbank.com
농협선물	02-3787-8200	http://www.nfutures.co.kr/
농협중앙회	02-2080-5114	http://banking.nonghyup.com
대신증권	02-769-2000	http://www.daishin.co.kr
대우증권	02-768-3355	http://www.bestez.com
대한생명	1588-6363	http://www.korealife.com
대한투자증권	02-3771-7114	http://www.daetoo.com
동부증권	02-369-3000	http://www.winnet.co.kr
동양종합금융증권	02-3770-2000	http://www.myasset.com/
리딩투자증권	02-2009-7000	http://www.leadingkorea.com
메리츠증권	02-785-6611	http://www.imeritz.com
미래에셋증권	02-3774-1700	http://www.miraeasset.com
부국증권	02-784-1010	http://www.bookook.co.kr/
부산은행	1588-6200	http://www.pusanbank.co.kr/
브릿지증권	02-3779-3000	http://www.bridgefn.com
삼성생명	1588-3114	http://www.samsunglife.com/
삼성증권	02-2020-8000	http://www.samsungfn.com/
서울증권	02-368-6114	http://www.seoulstock.co.kr
수협은행	1588-1515	http://www.suhyup-bank.com
신영증권	02-780-7000	http://www.shinyoung.com
신흥증권	02-3787-2114	http://www.shs.co.kr
우리투자증권	02-768-7000	http://www.woonwm.com/
유화증권	02-3770-0100	http://www.yhs.co.kr
이트레이드증권	1588-2428	http://www.etrade.co.kr/
전북은행	1588-4477	http://www.jbbank.co.kr/
푸르덴셜증권	02-3770-7114	http://www.prucyber.com
하나은행	1588-1111	http://www.hanabank.com/
하나증권	02-3771-3000	http://www.clickhana.co.kr
하이투자증권	02-318-9111	http://www.hi-ib.com
한국투자증권	02-768-5000	http://www.hantutams.com
한양증권	02-3770-5000	http://www.hygood.co.kr
한화증권	02-3772-7000	http://www.koreastock.co.kr
현대증권	02-783-6511	http://www.youfirst.co.kr
한불종합금융	02-777-7711	http://www.sogeko.com/
흥국증권중개	02-780-9290	http://www.hksec.co.kr
KGI 증권	02-3770-9000	http://www.kgieworld.co.kr
NH투자증권	02-2004-4114	http://www.nhis.com
SC 제일은행	02-3702-3114	http://www.scfirstbank.com/
SK 증권	02-3773-8245	http://www.priden.com
코라아RB증권	02-550-6200	http://www.korearb.com/ 마 가서트기즈귀이 시계 화매하시아 키시카이오

⁻위 판매회사 개요는 당시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들로 해당 간접투지증권의 실제 판매회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주요 업무
- ①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② 수익증권 환매업무
- ③ 수익증권 교부업무
- ④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⑤ 각종 장부 · 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⑥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시항

■ 의무 및책임

- ①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화시는 투자신탁의 해자사유, 해지알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②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판매화시는 수탁화시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개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지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1. 수탁회사의 개요

회사의 상호	<u> </u>	대표전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시 중구봉래동 1 가 25 번지 HSBC 빌딩 시서함 :	02-2004-0571
서울지점	중앙우체국 6910	

2. 수탁회사의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

항

- ② 지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에 관한 사

- ④ 지신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 ① 수탁화시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채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 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수탁화시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화시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화시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화시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시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일반시무관

□ 화사명 : 신한아이타스㈜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리회사의 개

요

용

임

□ 연 혁: - 설립일: 2000 년 6 월 15 일 - 지본금: 20,03 억원

2. 수탁받은

① 자산의 평가

주요 업무내

- ③ 간접투자자산의 신규계약 추가납입, 일부인출 계약해지
- ④ 순자산가치의 산정
 ⑤ 순자산가치를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하는 자에 통보
 - ⑥ 회계처리 자료의 제공

의 외세시다 사료의

⑦ 기타 회계처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무

■ 의무 및 책

-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일반시무관리회사가 수탁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일반시무관리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시무관리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시항

1. 채권평가회

화시명KIS채권평가한국채권평가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
권빌딩 9층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회문빌딩 9층

시의 개요

연락처	02-3770-0400	02-399-335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등록일	2000. 6. 29.	2000. 7. 1.
지본금	30억원	50억원
연혁	2000.6. 키스채권평가(주)설립	2000. 5.국내최초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신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내용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시항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에 관한 시항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단,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시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의결시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시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시항
-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시항
-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시항

<의결권> (1) 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2)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시할 수 없습니다.

<의결방법> 수익지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1)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압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업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소집 주체 및 통지>

-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시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く연기수익자총회

- 자산운용화시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당해종류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화시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당해 종류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당해 종류수익증권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시항

-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③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지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기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 청구권에 ②

관한 시항

- 3. 장부·서류의 ① 수익자는 자산운용화사 또는 판매화시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지산매매거래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시항
-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우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재판관할에 관한 시항
- 자산운용화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신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화사 또는 판매화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시항
- ①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시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п 고지에 과하 지하

Ⅱ. 공시에 관한 시항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구 분	공사주기	공시내용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 (<u>www.fss.or.kr</u>) 및 자산운용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영업보고서 매 분기 종료후 20 일이내		1. 일반 현황 2. 세부 현황 3. 기준가격표 4. 주요 영업수익 구성 현황 5. 파생상품 현황 6. 의결권공시시항		
(www.amak.or.kr)	결산서류	매결산일로부터 2 월이내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유가증권내역 4. 법제121 조의 자산운용보고서		
	감사보고서	매결산일로부터 2 월이내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 보고서	구 분		제공 내용	제공 절차	
및 수탁회사 보고서 >	보고서 ((기준일(회계기간개시일5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6 운용경과의 개요 및 운용7 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저나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3 월에 1 회 이상 간접투자자에게 제공		
	보고서 (신탁약관의 주요 변경시형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법 제132 조제1 항 각호의 법 제92 조제3 항의 규정경우의 그 내용 회계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를 시항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간접투자자에게 제공		

2. 수시공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지산운용회사(www.nhca.com) · 판매회사(맨하단참조) 및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사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신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3.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4.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지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시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_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시항

공시

- **의결권 행시에 관한** ①자신운용화시는 투자신탁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시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시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지산운용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때에는 수익자가 당해 의결권행사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지침
 -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간접투자기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 3. 투자신탁의 지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 79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명	: 베트남 아세안 플러스 주식투자신탁1호			
□ 판 매 일	:			
□ 투자자 확인 사항				
	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밑줄	친 곳
* 투자설명서를 제근	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릍)	<u>(</u> 그 주요내용을) <u>.</u>			
		년	월	일
	성명	서명	등 또는	: (인)